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056 호】

2014년 03월 11일 (화)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입 법 예 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12호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78호 도로명주소 고시 25

고양시 고시 제2014-79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28

고양시 고시 제2014-80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0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 월 1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동 종합복지회관의 용어의 정의, 복지회관의 사용제한 근거 및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등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정비하여 복지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복지회관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신설)
- 나. 복지회관의 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다. 복지회관의 사용제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 신설)
- 라.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3년)를 신설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 마.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그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까지로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바.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7조 신설)

사. 조례 별표1의 복지회관 명칭 중 지축보금자리에 편입된 효자동 종합복지회관을 삭제하고, 2014년 4월에 준공예정인 대덕동 복지회관을 추가하며, 새주소사업에 따라 복지회관의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함(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3월 31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복지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031-8075-3246

○ 팩 스 : 031)8075-49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 종합복지회관” (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복지회관에 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시설의 범위) ①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복지시설

3. 여성복지시설

4. 주민복지시설

5. 청소년교육시설

6. 실내체육시설

7.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복지회관은 동 주민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운영비 등) 수탁자는 회관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수입 전액을 복지회관 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전기료,전화료,냉·난방비,인건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으로 자체 충당이 어려운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회관의 이용 또는 사용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시간) 복지회관의 사용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주간 : 09:00~18:00

2. 야간 : 18:00~23:00

제8조(시설사용)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전일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 전액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및 등록 장애인 : 50%감면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9조의 후단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의 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한 때
2. 고양시의 귀책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중지된 때
3.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료의 반환신청을 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복지회관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액은 별표3과 같다.

제12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관련법규 및 사용승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시설변경 등) ① 복지회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물을 일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회관을 사용 후 반환할 때에는 변경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대여금지) 사용자는 사용권을 대여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수탁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고양시의회 의원
 2. 해당 지역주민 대표
 3. 그 밖의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운영 할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장이 되며, 그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까지로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지회관의 인력·시설 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복지회관 이용자의 수강료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복지회관의 회계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복지회관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5. 수탁자는 계약서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복지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 20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한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확인된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써 지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위탁 운영 중인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소관과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팀장 성명	복지시설팀장 홍점수
	담당자 성명·전화	권재원 (8075-3246)

【별표 1】

동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비고
고양시 능곡동 종합복지회관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04번길 18	
고양시 화전동 종합복지회관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1	
고양시 관산동 가장 종합복지회관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9번길 21	
고양시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9-11	
고양시 신도동 종합복지회관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0	
고양시 성사동 종합복지회관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49-7	
고양시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42번길 28	
고양시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34	

【별표 2】

동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 시설사용료(단체, 주민)

구분	시 간	금 액	비 고
강 당	09:00~18:00 (주간)	15,000원/시간 (평 일)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에도 1시간으로 본다. ※ 기본 비품을 포함하며, 추가 설비는 사용자 부담 (음향·영상시설 등)
		18,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8:00~23:00 (야간)	20,000원/시간 (평 일)	
		24,000원/시간 (토·일·공휴일)	
회의실	09:00~18:00 (주간)	10,000원/시간 (평 일)	※ 회의실 기본 집기는 포함 (추가 설비는 사용자 부담)
		12,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8:00~23:00 (야간)	12,000원/시간 (평 일)	
		14,000원/시간 (토·일·공휴일)	
냉 · 난방비	시간당		○ 냉방사용료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 난방사용료 : ·중앙집중식 : 11 당 유류단가×시간당 유류 소비량 ×사용면적/건축면적 ·개별난방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별표 3】

동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기준

(제11조 제2항 관련)

구 분	반환금액
○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이전인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전액
○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이후인 경우	○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동 종합복지회관</u>”(이하 “<u>복지회관</u>”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u>수탁자</u>”란 복지회관에 대하여 <u>고양시장</u>(이하 “<u>시장</u>”이라 한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u>제3조(복지회관의 용도)</u> ① 복지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그 밖에 「<u>사회복지사업법</u>」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복지회관은 <u>순수 복지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동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u> 다만, <u>시장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u>	<u>제4조(시설의 범위)</u> ① 설치할 수 있는 1.~6. (현행과 같음) 7. 사회복지사업 ②<u>동 주민센터</u><u>시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제4조(운영비 등)</u> 동 복지회관 시설운영자는 회관시설의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은 전액 회관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전기료, 전화료, 냉·난방비, 관리인력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으로 자체 충당이 어려운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지원할 수 있다.	<u>제5조(운영비 등)</u> 수탁자는<u>수입 전액</u>을 복지회관 관리.....<u>인건비</u> 등)<u>예산의 범위</u>.....

현행	개정안
<u>제5조(관리인)</u>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인을 고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u>제9조(사용료의 면제)</u>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복지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u>제10조(사용료의 환불)</u> ① 제8조의 후단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의 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한 때 2. 시의 귀책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중지된 때 <신설>	<삭제> <u>제6조(사용의 제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회관의 이용 또는 사용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u>제10조(사용료의 감면)</u>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 전액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및 등록 장애인 : 50%감면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제11조(사용료의 반환)</u> ① 제9조..... 반환..... 1.....그 밖의..... 2. 고양시..... 3.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료의 반환신청을 할 경우

현행	개정안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u>환불액은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산출액으로 한다.</u> <u>제14조(원상복구)</u> 사용자는 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u>제15조(위탁운영)</u> ①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도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및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동 종합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u>제22조의 2 및 제23조</u>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u>제3항</u>을 따른다. <u>제15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u>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u>반환액은 별표3과 같다.</u> <u><삭 제></u> <u>제15조(위탁운영)</u>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u><삭 제></u>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수탁 운영할 경우.....<u>제21조</u>.....<u>제2항</u>..... <u>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u> ①<u>복지회관</u>..... 구성하며,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한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탁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

현 행	개 정 안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u><신 설></u>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해당지역 동장 2. 시의원 3. 지역주민 대표 4. 기타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u><신 설></u> <u><신 설></u> ④ 그 밖에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u><신 설></u>	② 5명 15명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지역 고양시의회 의원 2. 해당지역 주민대표 3. 그 밖의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운영할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장이 되며, 그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까지로 한다. <u><삭 제></u> <u>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u>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지회관의 인력·시설 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복지회관 이용자의 수강료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복지회관의 회계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u>제16조(수탁자의 의무)</u> 수탁운영을 승인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생략) 3.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담당 공무원은 승인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생략) <u><신 설></u>	<u>제18조(수탁자의 의무)</u> 수탁자..... 1.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복지회관이 활성화되도록 2.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5. 수탁자는 계약서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u>제17조(위탁의 해제 등)</u>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복지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5. (생략) <u><신 설></u>	<u>제19조(위탁의 해지 등)</u> ①..... 해지..... 1. 제18조.....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5. (현행과 같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한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u>제18조(지도감독)</u>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확인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u>제20조(지도·감독)</u> ①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확인된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u>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u> <u>제19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②<u>문서로써 지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제21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u> <u>는 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u> <u>②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u> <u>③ 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현행	개정안																																																						
【별표 1】 동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 <table><tr><th>명칭</th><th>소재지</th><th>비고</th></tr><tr><td>고양시 능곡동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95-2,8번지</u></td><td></td></tr><tr><td>고양시 화전동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26-6,8,16번지</u></td><td></td></tr><tr><td>고양시 관산동 가장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41-24번지</u></td><td></td></tr><tr><td>고양시 관산동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15-4번지</u></td><td></td></tr><tr><td><u>고양시 효자동</u> <u>종합복지회관</u></td><td><u>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40-59번지</u></td><td>삭제</td></tr><tr><td>고양시 신도동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0-50번지</u></td><td></td></tr><tr><td>고양시 성사동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70-7번지</u></td><td></td></tr><tr><td>고양시 고양동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33-2번지</u></td><td></td></tr></table>	명칭	소재지	비고	고양시 능곡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95-2,8번지</u>		고양시 화전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26-6,8,16번지</u>		고양시 관산동 가장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41-24번지</u>		고양시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15-4번지</u>		<u>고양시 효자동</u> <u>종합복지회관</u>	<u>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40-59번지</u>	삭제	고양시 신도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0-50번지</u>		고양시 성사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70-7번지</u>		고양시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33-2번지</u>		【별표 1】 동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 <table><tr><th>명칭</th><th>소재지</th><th>비고</th></tr><tr><td>고양시 능곡동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04번길 18</u></td><td></td></tr><tr><td>고양시 화전동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1</u></td><td></td></tr><tr><td>고양시 관산동 가장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9번길 21</u></td><td></td></tr><tr><td>고양시 관산동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9-11</u></td><td></td></tr><tr><td>고양시 신도동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0</u></td><td></td></tr><tr><td>고양시 성사동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49-7</u></td><td></td></tr><tr><td>고양시 고양동 종합복지회관</td><td><u>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42번길 28</u></td><td></td></tr><tr><td><u>고양시 대덕동</u> <u>종합복지회관</u></td><td><u>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34</u></td><td>신설</td></tr></table>	명칭	소재지	비고	고양시 능곡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04번길 18</u>		고양시 화전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1</u>		고양시 관산동 가장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9번길 21</u>		고양시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9-11</u>		고양시 신도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0</u>		고양시 성사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49-7</u>		고양시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42번길 28</u>		<u>고양시 대덕동</u> <u>종합복지회관</u>	<u>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34</u>	신설
명칭	소재지	비고																																																					
고양시 능곡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95-2,8번지</u>																																																						
고양시 화전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26-6,8,16번지</u>																																																						
고양시 관산동 가장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41-24번지</u>																																																						
고양시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15-4번지</u>																																																						
<u>고양시 효자동</u> <u>종합복지회관</u>	<u>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40-59번지</u>	삭제																																																					
고양시 신도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0-50번지</u>																																																						
고양시 성사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70-7번지</u>																																																						
고양시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33-2번지</u>																																																						
명칭	소재지	비고																																																					
고양시 능곡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04번길 18</u>																																																						
고양시 화전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1</u>																																																						
고양시 관산동 가장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9번길 21</u>																																																						
고양시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9-11</u>																																																						
고양시 신도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0</u>																																																						
고양시 성사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49-7</u>																																																						
고양시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u>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42번길 28</u>																																																						
<u>고양시 대덕동</u> <u>종합복지회관</u>	<u>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34</u>	신설																																																					

현행	개정안																																											
【별표 2】 동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 시설사용료(단체, 주민) <table><tr><th>구분</th><th>기준</th><th>요액</th><th>비고</th></tr><tr><td rowspan="2">강당</td><td>09:00~18:00</td><td>1,5000원/시간</td><td rowspan="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에도 1시간으로 본다. ○ 토,일요일은 기준요액의 20% 가산 ※기본 비품 포함 (마이크, 의자 등)</td></tr><tr><td>18:00~23:00</td><td>20,000원/시간</td></tr><tr><td>냉, 난방비</td><td>시간당</td><td></td><td>○ 냉방사용료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 난방사용료 : ·중앙집중식 : 11 당 유류단가×시간당 유류 소비량×사용면적/건축면적 ·개별난방: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td></tr></table> □ 수탁관리자 사용료 <table><tr><th>구분</th><th>산출내역</th></tr><tr><td>일부사용</td><td>○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되, 공공·공공용의 목적인 경우 1,000분의 25로 한다.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td></tr></table>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강당	09:00~18:00	1,5000원/시간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에도 1시간으로 본다. ○ 토,일요일은 기준요액의 20% 가산 ※기본 비품 포함 (마이크, 의자 등)	18:00~23:00	20,000원/시간	냉, 난방비	시간당		○ 냉방사용료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 난방사용료 : ·중앙집중식 : 11 당 유류단가×시간당 유류 소비량×사용면적/건축면적 ·개별난방: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구분	산출내역	일부사용	○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되, 공공·공공용의 목적인 경우 1,000분의 25로 한다.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동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 시설사용료(단체, 주민) <table><tr><th>구분</th><th>시 간</th><th>금 액</th><th>비고</th></tr><tr><td rowspan="4">강당</td><td rowspan="2">09:00~18:00 (주간)</td><td>15,000원/시간 (평 일)</td><td rowspan="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에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td></tr><tr><td>18,000원/시간 (토·일·공휴일)</td></tr><tr><td rowspan="2">18:00~23:00 (야간)</td><td>20,000원/시간 (평 일)</td><td rowspan="2">※ 기본 비품을 포함하며, 추가설비는 사용자 부담 (음향·영상시설 등)</td></tr><tr><td>24,000원/시간 (토·일·공휴일)</td></tr><tr><td rowspan="4">회의실</td><td rowspan="2">09:00~18:00 (주간)</td><td>10,000원/시간 (평 일)</td><td rowspan="4">※ 회의실 기본 집기는 포함 (추가 설비는 사용자 부담)</td></tr><tr><td>12,000원/시간 (토·일·공휴일)</td></tr><tr><td rowspan="2">18:00~23:00 (야간)</td><td>12,000원/시간 (평 일)</td></tr><tr><td>14,000원/시간 (토·일·공휴일)</td></tr><tr><td>냉·난방비</td><td>시간당</td><td></td><td>○ 냉방사용료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 난방사용료 : · 중앙집중식 : 11 당 유류단가×시간당 유류 소비량 ×사용면적/건축면적 · 개별난방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td></tr></table> <삭 제>	구분	시 간	금 액	비고	강당	09:00~18:00 (주간)	15,000원/시간 (평 일)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에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18,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8:00~23:00 (야간)	20,000원/시간 (평 일)	※ 기본 비품을 포함하며, 추가설비는 사용자 부담 (음향·영상시설 등)	24,000원/시간 (토·일·공휴일)	회의실	09:00~18:00 (주간)	10,000원/시간 (평 일)	※ 회의실 기본 집기는 포함 (추가 설비는 사용자 부담)	12,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8:00~23:00 (야간)	12,000원/시간 (평 일)	14,000원/시간 (토·일·공휴일)	냉·난방비	시간당		○ 냉방사용료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 난방사용료 : · 중앙집중식 : 11 당 유류단가×시간당 유류 소비량 ×사용면적/건축면적 · 개별난방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강당	09:00~18:00	1,5000원/시간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에도 1시간으로 본다. ○ 토,일요일은 기준요액의 20% 가산 ※기본 비품 포함 (마이크, 의자 등)																																									
	18:00~23:00	20,000원/시간																																										
냉, 난방비	시간당		○ 냉방사용료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 난방사용료 : ·중앙집중식 : 11 당 유류단가×시간당 유류 소비량×사용면적/건축면적 ·개별난방: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구분	산출내역																																											
일부사용	○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되, 공공·공공용의 목적인 경우 1,000분의 25로 한다.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분	시 간	금 액	비고																																									
강당	09:00~18:00 (주간)	15,000원/시간 (평 일)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에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18,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8:00~23:00 (야간)	20,000원/시간 (평 일)	※ 기본 비품을 포함하며, 추가설비는 사용자 부담 (음향·영상시설 등)																																									
		24,000원/시간 (토·일·공휴일)																																										
회의실	09:00~18:00 (주간)	10,000원/시간 (평 일)	※ 회의실 기본 집기는 포함 (추가 설비는 사용자 부담)																																									
		12,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8:00~23:00 (야간)	12,000원/시간 (평 일)																																										
		14,000원/시간 (토·일·공휴일)																																										
냉·난방비	시간당		○ 냉방사용료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 난방사용료 : · 중앙집중식 : 11 당 유류단가×시간당 유류 소비량 ×사용면적/건축면적 · 개별난방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현행	개정안										
<신설>	【별표 3】 동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기준 (제11조 제2항 관련) <table> <tr> <th>구분</th><th>반환금액</th></tr> <tr> <td>○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전인 경우</td><td>○ 납부한 대관료 전액</td></tr> <tr> <td>○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이후인 경우</td><td>○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td></tr> <tr> <td>○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td><td>○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td></tr> <tr> <td>○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td><td>○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td></tr> </table>	구분	반환금액	○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전인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전액	○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이후인 경우	○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구분	반환금액										
○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전인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전액										
○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이후인 경우	○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4조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군·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고양시 고시 제2014 - 78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3.11.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46-3 외 3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3.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 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82-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46-3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36-4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40-19, 440-117, 440-6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복지길 52	20000727	효자동에 위치한 복지관을 지나는 도로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8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744-33	20090710	광역도로로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3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374-68	20090911	옛군청이 위치한 곳으로 관아를 지칭하는 말을 도로명에 적용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04-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55-17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37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길 151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7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199-51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17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58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199-98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59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55-62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82-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14-15	20090911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로로서 고양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8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54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50-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2006	20090911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로로서 고양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3-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로 68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98-16, 783-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181	20090911	행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8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493번길 166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4930m에 위치한도로	
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208	20100126	옛 포구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6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493번길 50-58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4930m에 위치한도로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25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리골길124번길 103	20100126	서리골길 시점에서 1240m에 위치한 도로	
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76-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954번길 13-18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9540m에 위치한 도로	
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37-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121번길 95-19	20100126	용두로 시점에서 1210m에 위치한 도로	
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83-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20번길 46-9	20100126	행주산성로 시점에서 1200m에 위치하 도로	
2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5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2길 48	20120601	삼송동과 원흥동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4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솔밭2길 55	20120601	소나무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1로 37	20131022	고유지명을 활용한 일련번호 방식을 도로명에 적용	
2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3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67	20090911	동국대병원을 지나는 도로로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4-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46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687-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11번길 13-8	20100126	대산로 시점에서 110m에 위치한 도로	
3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444-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64번길 128-55	20100126	송포로 시점에서 1640m에 위치한 도로	
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81-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01번길 59	20100126	탄중로 시점에서 1010m에 위치한 도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 월 11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13 외 1 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3.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87,288-3,80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87,288,288-3,80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13	2014.3.11.	관련지번 변경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1708-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1708-5, 1708-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길 150-3	2014.3.11.	관련지번 변경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1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64번길 128-55 외 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3.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64번길 128-55	2014.3.11.	건물신축에 따른 폐지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01번길 59	2014.3.11.	건물신축에 따른 폐지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2006	2014.3.11.	건물신축에 따른 폐지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46	2014.3.11.	건물신축에 따른 폐지	